

---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주요 FAQ

---

2020. 10. 16.

# 목 차

## I 지원대상 관련

1.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	1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	2
3. 지원제외 업종은 .....	4
4.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이란 .....	6
5. 정부 지원자금 중복수령 가능 여부 .....	7
6. 고용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지원 여부 .....	7
7. 개인소형화물차주의 지원 여부 .....	8
8. '19년엔 매출이 없고 '20년 매출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 .....	8
9. '20년 5월에 창업해서 6~8월에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여부 .....	9
10. 임시 휴업자 또는 세금체납자 지원 여부 .....	9
11. 무등록 사업자 지원 여부 .....	9

## II 확인지급 신청 및 지급 관련

12. 확인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는지 .....	10
13. 온라인 신청 및 지원절차는 .....	11
14. 현장방문 신청 및 지원절차는 .....	14
15.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여부 .....	15
16. 여러 사업체 운영시 어떤 사업체로 신청해야 하는지 .....	15

17. '19년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의 신청 가능 여부 .....	17
18. 대표자 본인 계좌만 수령 가능 여부 .....	17
19. 신청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17
20. 신청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은 .....	18
21. 신청결과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의신청은 어디로 .....	18

### Ⅲ 매출감소 판단 관련

22.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기준은 .....	19
23. '19년 중에 창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액 계산방법은 .....	19
24. 매출감소 판단 시 비과세 매출 포함 여부 .....	20
25. 월평균 매출액 계산시 휴업기간 포함 여부 .....	20

# I

## 지원대상 관련

###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sup>①</sup>(집합금지업종, <sup>②</sup>영업제한업종) 및 <sup>③</sup>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구 분		소상공인 여 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 소	지원금액
특별 피해 업종	집합금지업종	○	업종별 소기업 매출기준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		무관	150만원
일반업종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 외)		○	연 4억원 이하	○	100만원

○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sup>1)</sup>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sup>2)</sup>인 소상공인

1)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2)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관련 참고

#### < 지원 대상 >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

## 2.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관련 참고

####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19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20년)에 창업한 경우
    - 1)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 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산정일=새희망자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2)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1)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2)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미만 :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참고**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0인 미만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50억원 이하	5인 미만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0억원 이하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10억원 이하	5인 미만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3.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지원대상(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③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용자제외 업종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지원에 따른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적어 정책적으로 결정

○ 다만, 용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 관련 참고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68	<b>부동산업</b>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b>부동산관리업(6821)</b> ,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b>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b> 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b>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b>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b>보건업</b>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b>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b>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b>복권 판매업</b>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b>무도장 운영업</b>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sup>2</sup>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 4. 특별피해업종이란?(지자체 집합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 포함 여부)

-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

구분	해당 업종 및 시설
① 집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li> <li>(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li> </ul>
② 영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li> </ul>

- 다만, 8월 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 8.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 집합금지 15종(놀이공원, 게임장, 오락실 등)

#### 관련 참고

-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중대본 발표기준)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li> <li>*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등) 집합금지</li> <li>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추가</li> </ul>	○ 해당사항 없음
영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21시 이후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li> <li>○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li> </ul>	○ 해당사항 없음

## 5.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 6. 올 7월에 고용부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용부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받으셨다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중기부의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면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지원받으신 경우, 고용부(고용복지센터)로부터 지원확인서를 받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고용복지센터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시 제출해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관련 참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14개 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굴착기, 덤프트럭 등)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 골프장캐디, 화물자동차운전사(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유형에 따른 새희망자금 대상 여부

1차 수급 유형	2차 수급 유형	해당사업	증빙서류
① 특고로 수급	14개 특고 직종	→ 긴급고지	-
	소상공인으로서 2차 긴급고지 수급자	→ 새희망	2차 긴급고지 50만원 반납 확인서
* 1차 긴급고지 특고 유형으로 수급받은 자는 2차에서 이미 일괄 50만원 추가 지급함			
② 영세자영업으로 수급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 않는 소상공인	→ 새희망	-
	14개 특고 직종 (사업자등록증 보유)	→ 새희망	1차 영세자영업자로 지원받은 확인서
③ 미수급자	14개 특고 직종	→ 긴급고지	-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새희망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

7. 개인소형화물차주의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한지?

□ 화물차주 중 ①수출입 컨테이너, ②시멘트, ③철강재, ④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주는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고용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입니다.

\* 인화성 또는 발화성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농약 등

○ 하지만 위의 4개 화물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화물차주라면 중기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19년 12월에 창업했으나 '20년에 실제 영업을 한 경우 등)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올해 5월에 창업했지만, 6~8월까지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점포 인테리어 등 창업 준비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음)

- '20년 1~5월까지 창업한 분들의 새희망자금 자격은 올 6,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8월 매출액이 감소한 곳이어야 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영업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11.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II

## 확인지급 신청 및 지급 관련

### 12.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을 받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 **(온라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할 수 있음
  -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09:00 ~ 18:00까지 운영)하시면 됩니다.
  - \* 지자체 현장 접수처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2,825곳 (중기부 및 소진공 홈페이지 확인지급 공고에 첨부한 현장 접수처 파일 참조)
  - 다만,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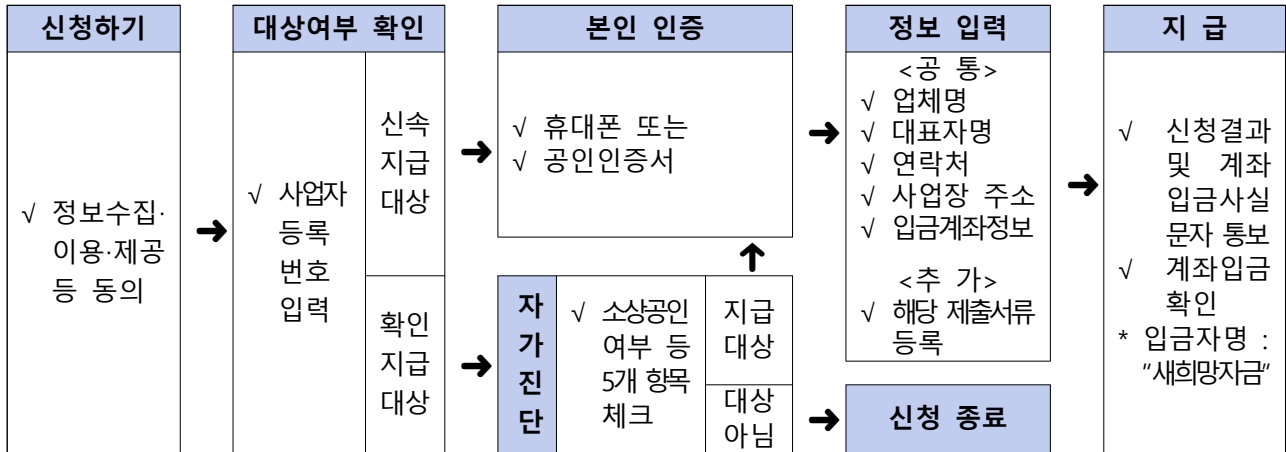
#### < 현장방문 신청 5부제 일정 >

접수일자	10.26 (월)	10.27 (화)	10.28 (수)	10.29 (목)	10.30 (금)	10.31~ 11.1 (토/일)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1, 6 (예 : 1961년생, 1966년생)	2, 7	3, 8	4, 9	5, 0	휴무

### 13. 온라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사업체 정보 등 입력과 추가서류를 첨부(해당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 온라인 신청 추가 제출서류(해당 시) >

구 분	제 출 서 류
①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고 관련 직종 사업체	√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급지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급지를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등 → 2차 긴급지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급지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 서식)
② 공동대표 사업체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③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대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도 포함
④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증빙 신청 사업체 (일반업종에 한함)	√ '20년 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 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서, POS 현금 매출액 (단,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 제출한 증빙자료는 국세청 통보 예정
⑤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기업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등 中 1
⑥ 합기도 체육도장 중 폐업 후 '20년 6월에 다시 개업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 도장에 한함
⑦ 개인 → 법인전환 사업체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후 개인사업자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로 '20.5월말 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하다 올 6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창업일 확인)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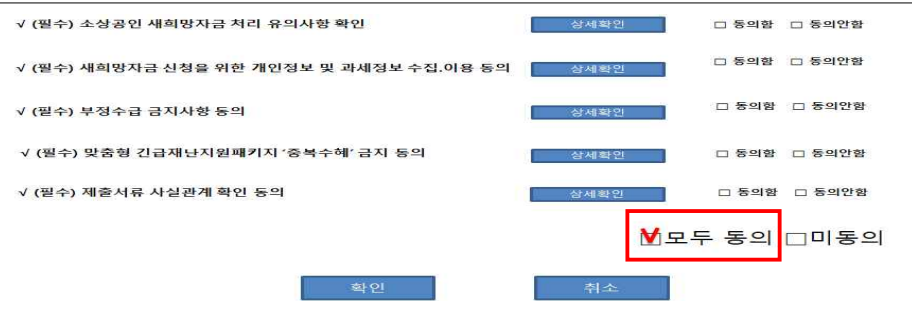
#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신청하기



## ② 개인정보 제공 및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등 동의

→ 개별 동의 또는 모두 동의에 체크



## ③ 지급대상자 여부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복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새희망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 금액이 큰 1개 사업체의 등록번호만 입력



## ◆ 조회결과, “행정정보상 지급대상 정보가 없는 경우” 사업체 자가 진단(5개 항목)

- 1) 모두 “예”인 경우에는 [확인] 버튼 클릭, 확인지급 신청절차 진행 [예] 버튼 클릭
- 2) 1개라도 “아니오”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종료] 버튼 클릭

□ 아래의 항목을 모두 확인한 후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상공인에 해당하십니까?	□예 □아니오
② '20.5.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중이며,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니십니까?	□예 □아니오
③ '19년 기준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보다 감소하십니까? * (20년 장업자) '5월 31일 이전 장업자로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 감소 * ('19년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단,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가 원칙 단,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목적으로 정부(중대본)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	□예 □아니오
④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포함되지 않으십니까? * 지원제외업종: 도박업종, 변호사, 병원,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예 □아니오
⑤ 긴급고용안정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 본 자가진단의 결과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오

✓자가진단 실시 후 안내 메시지

<진단항목이 모두 “예”인 경우>

진단한 조건의 사업장은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절차를 진행 하시겠습니까?

<진단항목 중 “아니오”가 있는 경우 >

진단한 조건의 사업장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인 인증**  
 → 휴대폰 또는 공인  
 인증서 선택 인증  
 ※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 은행(우체국은 불가)  
 또는 범용인증서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123 - 45 - 67890

\* 신청유형을 선택하고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공인인증서 선택 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은 법인인증서를 제출하세요.)

**휴대폰 본인확인 (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개인, 법인)**

※ 유의사항  
 대표자 1인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큰 특별피해업종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 결과 안내 메시지

이미 신청하신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습니다.

확인

이미 신청하신 법인등록번호가 있습니다.

확인

✓ 인증 후 안내 메시지

귀하는 0000 유형입니다.  
 000, 00 의 증빙서류를 꼭 첨부하여 주십시오

확인

<유형>  
 공동대표,  
 긴급지,  
 비영리단체

**⑤ 사업체 정보 입력 및  
 지원유형 선택**  
 →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입력  
 ※ 도로명 주소가 조회  
 되지 않으면 "상세  
 주소"란에 직접 입력

**기본정보**

사업자등록번호\* 123 45 67890

법인등록번호 (해당시)

업체명 \*

사업장 주소\* 주소검색 우편번호

주소 입력 상세주소 입력

**대표자 정보**

대표자 성명 \*

휴대전화번호\* 010 ' '없이 휴대폰번호 입력

대표전화 02 ' '없이 번호 입력

※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신청결과가 안내됩니다.

**지원정보**

지원유형\*  일반업종  영업제한  집합금지

**⑥ 지원금 입금계좌  
 정보 입력**  
 → 개인은 대표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 입력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  
 명의계좌 입금 가능  
 ※ 휴면 및 연금계좌, 거래  
 정지계좌는 지급 불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은  
 지급은행에 없음

본인 계좌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명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수령 희망하는 가족의 정보를 입력

성명

생년월일/성별 (법인은 비해당)

휴대전화번호 010 ' '없이 휴대폰번호 입력

입금계좌 정보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계좌번호\* **본인** **예금주** 농협 ▼ 계좌번호 입력

계좌인증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계좌번호,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 입력하신 계좌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압류계좌, 휴면계좌 등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 계좌로 입금을 희망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⑦ 증빙자료 첨부  
 (해당 시)**  
 → 가족명의 계좌 입금  
 공동대표, 긴급지  
 관련 사업체 등

**증빙자료(첨부파일)**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선택** ※ 대표자 명의 통장이 아닌 가족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으자 하는 경우

위임장 **파일선택** ※ 공동대표(개인·법인), 가족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의 경우

현금매출 증빙자료 (20년 장외자에 한함) **파일선택** ※ 20년 장외자 중에 매출입금 증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을 제외한 6월~8월간 아래의 현금  
 매출 증빙자료(제출 자료는 국제영어 폰트입니다)  
 1)통장거래내역서, 2)현금거래내역서 또는 거래내역서, 3)POS현  
 금 매출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인  
 서(고용부), 자기인증표 등 **파일선택**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지)를 받은 경우  
 \* 고용부에서 발급한 긴급지 지원 확인서 또는 긴급지 반납 확인서  
 \* 긴급지를 받지 않은 경우 - 투고, 용역사업자 확인 자기인증표

매입사실증명원 **파일선택** ※ 20.6.1 이후 개인기업 ->법인으로 전환 또는 합기도 도장 중 20.6.1이  
 후 폐업 후 사업장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인증서, 합동  
 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파일선택** ※ 비영리법인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파일선택** ※ 그 외 기타사항으로 요청한 증빙 서류 첨부

※ 첨부파일 확장자는 .PDF, PNG, JPG 등 가능하며 용량은 10MB를 초과 할 수 없음  
 ※ 반드시 제출서류 안내 링크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류 미비 시 보완하여 재 신청 필요)

신청완료    뒤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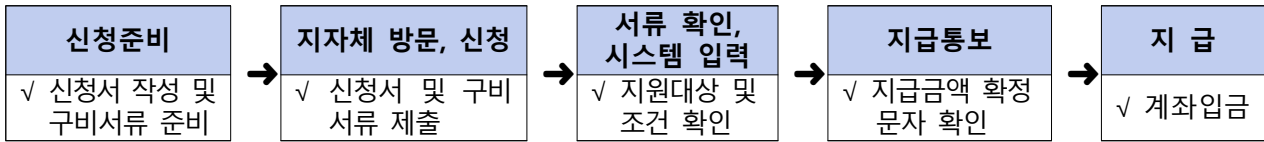
**⑧ 신청완료 후  
 SMS 안내**



## 14. 현장방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 직원이 서류 확인 후 시스템에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을 통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현장방문 신청 절차 >



< 현장방문 신청 제출서류 >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 서류	① 신청서(공고문 1호 서식)	※ 사업체 및 대표자 기본정보 및 지급계좌 정보 등 기재
	② 대표자 확인, 지급계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 통장 사본(개인은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③ 각종 동의서 (공고문 2, 3호 서식)	√ 개인(행정)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해당 시 추가 서류	①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고 직종 관련 사업체	√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1차 긴급지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급지 신청 당시에는 특고·프리랜서였으나 현재는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등 → 2차 긴급지 반납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1차 긴급지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14개 특고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 서식)
	② 공동대표 사업체	√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③ 가족 대리신청 또는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 위임장(4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대표 중 본인 명의가 아닌 사업체도 포함
	④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 증빙 신청 사업체 (일반업종에 한함)	√ 현금매출 확인서(공고문 5호 서식) √ '20년 6~8월까지 현금매출 증빙서류 → 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내역서, POS 현금 매출액 (단,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 장부 등은 불인정)
	⑤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 기업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등 중 1
	⑥ 합기도 체육도장 중 폐업 후 '20년 6월에 다시 개업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폐업후 '20.6.1~6.26 중 신규 사업자 등록한 합기도 도장에 한함
	⑦ 개인 → 법인전환 사업체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후 개인사업자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사업자로 '20.5월말 이전에 창업하여 운영하다 올 6월 이후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체(창업일 확인)

## 15.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등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 부득이 대표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자 위임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 휴대폰이 타인 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거래은행에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 신청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16.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어떤 사업체로 신청해야 하는지?

- 사업체당 1회, 대표자 1인 지급 원칙에 따라서 동일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특별피해 및 일반업종 운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업종의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이 더 많은 특별피해업종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 \*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상시 근로자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5인 미만)
- ② (일반업종만 운영) 모든 사업체가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업종의 지원기준(매출규모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로 매출 감소)을 충족하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해야 합니다.

- ③ (개인 및 법인사업자 운영) 개인사업체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개인사업체의 대표와 같더라도 법인사업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④ (공동대표 사업체 운영) 복수사업체 모두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표별 서로 다른 1개의 사업체만 신청(위임장 필요)해야 합니다.

## 관련 참고

### □ 동일인이 복수 사업체 운영 및 공동대표 시 신청 기준

구 분	신 청 기 준		
① 복수사업체 영위 → 대표자 1회 지급	대표자	사업체	신청 · 지원
	김사장	A기업 (개인)	A, B기업 중 1개만 신청 가능
B기업 (개인)			
② 일반업종의 복수사업체 영위 → 대표자 1회 지급	대표자	사업체(매출)	신청 · 지원
	김사장	A기업 (6억원)	4억원 초과로 신청 불가
B기업 (2억원)		신청 가능	
③ 일반업종 및 특별피해 업종 모두 영위 → 최고액 1회 지급	대표자	사업체(업종)	신청 · 지원
	김사장	A기업 (특별피해)	A기업 신청
B기업 (일반업종)			
④ 개인 및 법인사업체 모두 영위 → 개인 1인 지급, 법인 (본점 원칙)별 1회 지급	대표자	사업체(기업형태)	신청 · 지원
	김사장	A기업 (개인)	김사장 신청 가능
		B기업 (법인)	B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
C기업 (법인)		C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	
⑤ 공동대표 사업체 → 사업체당 1회 지급 * 대표 중 1인에 위임 필요	대표자	사업체	신청 · 지원
	김사장, 박사장	A기업	김사장과 박사장 중 1인만 신청 가능
⑥ 공동대표 및 복수사업체 → 대표자 1회, 사업체당 1회 지급 * 사업체별 서로 다른 대표 1인에 위임 필요	대표자	사업체	신청 · 지원
	김사장, 박사장	A기업	김사장은 A기업, 박사장은 B기업 신청 가능 또는
	김사장, 박사장	B기업	김사장은 B기업, 박사장은 A기업 신청 가능

## 17. '19년에 매출이 없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인데 신청해도 되는지?

- 일반업종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연 4,800만원 미만) 중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20년 부가가치세를 '21년 1월에 신고할 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그러나 '19년에는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18. 새희망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다만, 대표자의 계좌압류 등으로 부득이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함) 계좌로 입금을 희망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19. 신청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확인지급 신청결과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 [신청결과 확인]에서 조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라 우리경제  
**코로나19도 경제도  
여러분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문의처 : 1899-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

안내영상      FAQ      24시간 채팅상담

"새희망자금으로 다시 일어서어요!"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받어주실 지켜며  
잘 극복하겠습니다."

## 20.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유한 행정정보,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소상공인 및 특별피해업종, 매출감소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일부터 영업일 기준 2주 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21. 신청 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는데 검토를 잘못된 것 같아 다시 검토 요청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유가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온라인(원칙) 또는 방문 신청했던 지자체 현장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III

## 매출감소 판단 관련 (일반업종만 해당)

### 22.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9년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 '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이어야 합니다.

< 매출 감소 판단기준 >

구 분		기준 매출액	비교 매출액
'19년 이전 창업자	일반과세자	'20년 1~6월 월평균 매출액	'19년 월평균 매출액
	간이과세자	'20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 '21년 매출 신고시 확인	
'20년 창업자		'20년 8월 매출액	'20년 6, 7월 월평균 매출액

### 23. '19년 중에 창업한 경우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창업이후 월별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이 지난해 월평균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9년 9월과 12월에 창업한 경우 '19년 월평균 매출액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월평균 매출액 계산(예시1) >

'19.9월	'19.10월	'19.11월	'19.12월	'19년 월평균 매출액
300만원	500만원	400만원	600만원	450만원 =(300+500+400+600) ÷ 4개월

< 월평균 매출액 계산(예시2) >

'19.12월	'19년 월평균 매출액
300만원	300만원 = 300만원 ÷ 1개월

**24. 매출감소 증빙을 위해 현금매출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현금매출 증빙은 일반업종 중 '20년도 창업자\*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제출한 현금매출액은 국세청에 매출실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현금매출 증빙서류 제출 불가(국세청 매출 정보로 확인)

**< 현금매출 인정 증빙서류 >**

①	통장 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 은행 직인(날인) 필수
②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상대방 서명인 필수)
③	POS 현금 매출액

**25. 매출감소 판단시 과세 매출기준인지, 비과세 매출도 포함되는지?**

- 과세매출 및 비과세 매출을 모두 포함해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